

## 제30기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

상법 제 542 조의 4 및 당사 정관 제 19 조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% 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통지는 전자공고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 통지를 갈음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 365 조와 당사 정관 제 19 조에 의하여 제 30 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시 : 2023 년 07 월 20 일(목) 오전 09 시
2. 장소 :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 17 길 104 본사 별관
3. 회의목적사항

### [부의안건]

제 1 호 의안 : 정관일부 변경의 건

제 1-1 호 의안 : 제 35 조의 2(위원회)

### 4. 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 396 조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 또는 공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## 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주주님께서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을 통해 간접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### 6.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

2019 년 9 월 16 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,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(명부)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.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.

## 7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

우리회사는 「상법」 제 368 조의 4 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 160 조제 5 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,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.

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,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.

### 1)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관리 시스템

- 인터넷 주소 : 「<https://evote.ksd.or.kr>」
- 모바일 주소: 「<https://evote.ksd.or.kr/m>」

### 2) 전자투표 행사.전자위임장 수여기간 : 2023 년 07 월 10 일 오전 9 시 ~ 2023 년 07 월 19 일 17 시 (기간 중 24 시간 이용 가능)

### 3) 행사방법 :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.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

- 주주확인용 공동인증서의 종류 :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

(K-VOTE 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)

### 4) 수정동의안 처리 :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

## 8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- 1) 직접행사 : 주주총회 참석장(주주총회장 비치), 본인 신분증
- 2) 대리행사 : 주주총회 참석장(주주총회장 비치)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), 대리인의 신분증

## 9. 기타사항

-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(COVID-19)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제도의 활용을 권장 드립니다.

- 코로나 19 의 확산방지 관련 발열(37.5 도 이상 고열) 및 호흡기 증상(기침, 목아픔 등), 자가격리대상, 감염증 밀접접촉 등에 해당하시는 주주분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.

2023 년 07 월 05 일

오성첨단소재 주식회사

대표이사 이 장 원 (직인생략)

**<별첨> 안건세부**

## 1. 정관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	개정이유
제 5 장 이사· 이사회	제 5 장 이사· 이사회 및 위원회	위원회 신설
(신설)	제35조의2 (위원회) ①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1. 투명경영위원회 2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권한,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2조,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	